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2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3월 5일

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한 통·리·반을 분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2개 통·리 증설(안 별표 2)
 - 당초 : 691개 통·리(통 491, 리 200)
 - 변경 : 693개 통·리(통 491, 리 202)
 - 고아읍(증2개리) : 문성레이크자이 신축(문성10리 신설)
 - 문성태완노블리안 신축(문성11리 신설)

○ 28개반 증설(안 별표 2)

- 당초 : 4,997개 반
- 변경 : 5,025개 반(증28개 반)
 - 고아읍(증28개 반)
 - 문성레이크자이 신축(문성10리 : 20개 반 신설)
 - 문성태완노블리안 신축(문성11리 : 8개 반 신설)

○ 신축건물 지번 변경 및 오류 정정(안 별표 9)

- 송정동(3통 신축아파트[힐스테이트] 지번 변경)
 - 1~ 9반 : 송정동 37번지 → 송정동 529번지
 - 10~11반 : 송정동 44번지 → 송정동 531번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아파트 신축으로 통·리·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, 2개 리 및 28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691개 통·리 4,997개 반을 693개 통·리 5,025개 반으로 조정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번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통·리·반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